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3-9호
2023. 2. 17.(금)

차 례

조 례(1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1640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41호) 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조례 제1642호)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조례 제1643호) 3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조례 제1644호) 3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1645호) 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646호) 4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조례 제1647호) 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조례 제1648호) 6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49호) 6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조례 제1650호) 67

규 칙(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48호) 7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49호) 7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50호) 76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51호) 78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52호) 8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5호) 86

차 례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3-18호) 90

공 고(3)

- 대덕구 방법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3-187호) 91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공고 제2023-193호) 96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3-201호) 98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의회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구민에게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온라인의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소셜미디어 등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홍보매체의 운영) ① 의장은 홍보매체를 개설·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의정 소식 및 홍보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
3. 의정과 관련하여 구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매체 활용사업) ① 의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

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액면가 등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주요 의정활동, 의원 정보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제7조(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홍보매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소셜계정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의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의장은 홍보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홍보활동의 원칙 및 홍보매체를 개설·운영하여 홍보하는 방식을 적시하고, 주요 의정 사업의 여론 수렴 및 홍보 등 홍보매체의 활용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다. 홍보영상의 제작 및 홍보매체의 게시물의 관리 방법,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게시물 삭제 또는 차단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항에 대한 포상 및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감사장, 상장
2.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3.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

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퇴임 또는 전출 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의 위상 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출선수범한 사람으로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3(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의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본문 중 “별지 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단체장,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한다.

제1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기념패(공로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22.1.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됨으로서 관련 규정을 확대·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포상의 범위를 기념패 및 공로패, 모범공무원 포상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나. 기념패등의 수여대상 및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다.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

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2장 회기 운영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동시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기운영)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집회 및 소집)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는 회의일수 범위에서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1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장의 직무권한의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된다.

제15조(의장·부의장 등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동시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 5일 전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시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와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임기만료 후 최초집회일에 법 제63조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위원의 의장 직무 대행으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된 경우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

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후보사퇴 등에 따라 후보자가 1명으로 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의원이 투표를 할 때에는 지정된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른다.

제16조(의장·부의장 등의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선거일 전날 의회사무과 업무종료시간 18시까지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의원에게는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소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

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9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의원

제20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동시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 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2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3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⑤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 요구를 문서

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심사 대상인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심사 대상인 의원이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 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27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8조(상임위원회 설치)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2. 행정복지위원회: 6명 이내
3. 경제도시위원회: 6명 이내

제29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기획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복지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도시위원회

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0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

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동시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의장의 임기와 다를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제32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단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로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때에는 종전의 상임위원장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

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 내에 본회의가 개회되지 못할 경우 활동기간 종료 후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까지 그 위원회는 존속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

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및 개선탤한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7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8조(직무대리)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환경, 건설, 건축, 교통 등

해당 안건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심사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보조자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그 의결로 허락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

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심사보조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

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다만, 직무대리를 포함한다.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제43조(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일괄답변: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답변: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

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적은 별지 서식의 구정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4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5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제4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49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0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51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만 해당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로 한다.

[별지 서식]

구정질문요지서

제 회 (회) 제 차 본회의 년 월 일

발언의원	(서명)
소요시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질문요지</div> <p>※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p> <p>○ 답변대상 공무원 :</p>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된 의회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하여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의회 운영원칙 및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라. 의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 마.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 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 사. 질서와 경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총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별·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체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구청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4호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

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속		직급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성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명					
	민원요지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 7. 12. 시행)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다.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총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위탁운영의 방법 및 위탁계약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는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는 이용자의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립·의료지원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센터의 위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다.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활기금의 자금 대여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금 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 자활센터 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자금 대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이자율 등) 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연 1퍼센트
2. 연체이자율: 연 15퍼센트

②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 기간 및 대여 한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상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3. 대여받은 자금을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변경 신청을 포함한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6조(위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 업무
2. 제5조에 따른 기금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 업무

제7조(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전(補填)하여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금을 영 제26조의4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보전 대상 및 보전 비율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①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지방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해야 하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른 결산서

2. 기금 운용 성과의 분석 결과 서류
3. 기금 결산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6급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 방법) 구청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예탁
2. 국채 등 공채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1조(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제13

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 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자활기금의 용도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정함(안 제2조).
- 다. 자활기금의 자금 대여, 이자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라. 자활기금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자활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아. 자활기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이라 한다)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에는 공고일 현재 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설치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우선 순위표에 따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허가기간 또는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기준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

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우선적 신청자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사업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놀이활동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4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질서유지”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으로,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로, “정착”을 “정착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구청장”을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의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로 한정한다.

제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대덕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다. 2년 이상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4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회”를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의회”로 한다.

제41조제3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48조제1항 본문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

여”로 하고,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제3항 중 “회부”를 “부의”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서면”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제6장(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을 삭제한다.

제7장(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1조)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1조 삭제).
- 나. 의안의 제출·제안·발의 및 심사보고서의 제출을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안 제57조).
- 다. 이의유무에 의한 표결 시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4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를 “위원장이”
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2조의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급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를 “지급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별표1”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의 현행화로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나. 의정자문위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김홍태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5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 (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낮추고, 일부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자격증)을 국가직 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함(안 제8조).
- 나.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에서 전산직렬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를 추가하며, 항공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 및 '자가용조종사'를 추가함(안 별표 4).
- 다.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시설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와 8·9급 기준에 '기능사'를 추가하며, 조리직렬 6·7급 기준에 '산업기사'와 8·9급 기준에 '기능사'를 추가함(안 별표 4).
- 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전산직렬 자격증을 추가함(안 별표 6).
- 마.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함(안 별표 12).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규칙 제5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포상절차)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의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 당 증 서

소속:
직:
성명:

위 사람은 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모범공무원으로 선
발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 증서를 수여함.

○ 지급액: 금 원(월 원)

○ 지급기간: 년 월부터 ~ 년 월까지(2년간)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 ○ ○ (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로 위임한 모범공무원 대상자 선정 및 세부 운영 절차 등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련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모범공무원 목적, 포상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부터 제3조까지).
-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범공무원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다.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금액과 기간에 관한 사항 및 수당 지급의 중지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5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지원하고자할”을 “지원하고자 할”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30%”를 “30퍼센트”로, “한다)제3조”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협의체”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체의”를 “위원회의”로, “협의체가”를 “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3조제4호”를 “제7조제3항”으로, “협의체”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출 및 상환)”을 “(대여 및 상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을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자금 대여금액은 법인·단체·기업당”으로, “대출금액은 기업 당 1억원 이내로”를 “대여금액은 법인·단체·기업당 1억원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장비설치”를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시설·장비설치”로, “자활기업은”을 “경우에는”으로, “임대자금은”을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여이율”을 “대여이자율”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4항”을 “제5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서식)”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하여 협의회”를 “경우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제6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대여 할 때에는 대

하 금리를 조례 제6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대여금을 대여할 때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차보전)”을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을 “제7조에 따른 대여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은 금융기관등”으로, “대여이율에서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을 “대여이자율에서 조례 제4조제1항의 이자율을 공제한 이자율”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이율”을 “이자율”로, “안”을 “아니”로 한다.

제13조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체의 위원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게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에 맞게 시행규칙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나. 조례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6조).
- 다.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1조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1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82-9	오정로100번길 68-11	2023. 2. 17.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대동 166	회덕로34번길 20	2023. 2. 17.	건물신축	회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3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덕구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관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응코자함
4. 설치장소 : 방범용(36개소 / 50대) 【첨부1】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6. 예고기간 : 2023. 2. 17. ~ 2023. 3. 9.(20일간)
7.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3. 9.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첨부2】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 대덕구청 민원정보과(☎ 042-608-6092 fax 042-608-3939) 끝.

【첨부1】

대덕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연번	위 치	개소	대수		비고
			회전	고정	
계	36개소 50대	36	29	21	
1	중리북로37번길109 (중리동162-8)	1		2	
2	오정로52번길27 (오정동 265-32)	1	1	1	
3	읍내동521-28	1	1	2	
4	중리로54번길12 (중리동385-4)	1		2	
5	중리동로72번길14-16 (중리동139-6)	1		2	
6	중리동산21-53	1	1		
7	신탄진로762번길54 (신탄진동 167-1)	1	1		
8	신일동로17번길20 (신일동 1683)	1	1		
9	대전로1033번길63 (오정동 498-2)	1		2	
10	한남로17번길54-21 (오정동 223-144)	1	1		
11	한남로137번안길51 (오정동 494-5)	1		1	
12	신탄진동 55 (동일스위트투 산책로-1)	1	1		
13	신탄진동 55 (동일스위트투 산책로-2)	1	1		
14	신탄진동 55 (동일스위트투 산책로-3)	1	1		
15	계족산로135 (송촌동 462)	1		2	
16	읍내동283	1	1		
17	덕암동175-21	1	1		
18	오정동 223-232	1	1		
19	한남로17번길36-6 (오정동 223-55)	1	1		

연번	위 치	개소	대수		비고
			회전	고정	
20	한남로25번길23 (오정동 223-132)	1	1		
21	덕암북로10번길64 (덕암동6-25)	1	1		
22	한남로17번길47-16 (오정동 223-222)	1	1		
23	한남로17번길47-8 (오정동 223-108)	1	1		
24	대화1길 6 (대화동39-3)	1	1		
25	신탄진동로24번길27 (신탄진동 169-4)	1	1		
26	신탄진남로26 (신탄진동 166-3)	1	1		
27	대화동35-1146	1	1		
28	대화동16-76	1	1		
29	대화동산4-43	1	1		
30	대전로1207 (오정동 10-49)	1	1		
31	동심1길 80 (대화동35-163)	1	1		
32	아리랑로211 (법1동 344-16)	1	1		
33	우암로492 (비래동113-14)	1		2	
34	중리동101-1(쌍청어린이공원내)	3	3	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34-3번지 2㎡ 중 2㎡
- 토지소유자 : 오양세(주소 : 대전 동구 흥도동 107번지)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끝

[붙임]

토지(물건)조서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지분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공부 / 물건명	실제 / 구조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오정동	234-3	철	철	2	㎡	1/1	오양세	대전광역시 동구 흥도동 1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20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말소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공고기간 : 2023. 2. 17. ~ 2023. 3. 3.(14일간)
- 공고장소 : 대덕구 공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해당 대지 내 건축물 해체·열실					
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축물대장말소)	위치	소유자	층수	구조	용도	면적
	송촌동 171-10	유영재	지하1층 지상2층	세벽연와, 세벽, 철근콘크리트	주택, 변소, 지하	158.75㎡
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유의사항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건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

○ 연 락 처 : 042)608-5382, 모사전송(FAX) 042)608-3843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99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